심리상담 중개업 창업관련 세무회계

Q

1. 사업모델 : 고객과 상담사를 앱에서 중개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업이며, 상담사는 고객과 전화로 심리상담해 줌, 고객은 돈을 미리 자기 계정에 충전 해놓고 상담할 때마다 이용금액을 차감하고 회사는 중개수수료를 공제하고 차액을 상담사에게 지급함
2. 심리상담업은 면세사업인지? , 중개수수료는 과세사업인지(회사가 상담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음. 즉 , 프리랜서 임)?
3. 매출인식: (예시) 심리상담료 : 10, 000원일 경우[상담사 매출 10,000원, 회사 매출 중개수수료 2,200원 (vat포함)] 상담사에 지급할 금액 : 7,800원
4. 상담사 상담료 지급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의무자 : 소득구분 : 사업소득 해당하는지, 3.3%공제 , 원천징수의무자 : 중개업하는 회사인지?(대부분상담사는 프리랜서임)

A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정신건강증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므로 심리상담도 정신건강법상 인생상담의 범위에 포함되면 면세가 된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료중개수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입니다.
2. 귀사가 단순 중개만 하는 경우라면 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을 인식하여야 하며, 상담료 전체에 대해 상담사가 매출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귀사는 단순중개이므로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Q

귀속 2020년도에는 복식부기의무자였어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을 했구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금액도 있습니다.
귀속 2021년도에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면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을 안해도 되는 상황인데 2020년도에 넘어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 처리를 어떻게 해야될지요?

A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장부작성하셔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에 대해 한도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로 작성하시는 경우 이월액에 대해 별도의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초보자코너

농산물건조기 부가세 사후환급 관련

Q 농기계 납품업체인 신흥기업(주) 입니다.
7/1일 부터 농산물건조기 사후환급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저희 대리점에서 사후환급 대상자(농협 및 수협)을 통해 부가세 사후환급을 신청하려고 하니,
카드영수증을 증빙첨부서류로 인정할수없으니
세금계산서를 가져오라 합니다. 궁금한것은 카드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같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아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서에 세금계산서, 농어민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므로 신용카드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더라도 해당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여 발급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타업체를 통해 상품권 구입 시 부가세 과세여부

Q 일반적으로 상품권을 구입시에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부가세 과세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닌 법인인 A업체가 우리회사를 대신해서 상품권을 구입하고 우리가 A업체에게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우리회사와 A업체간에는 세금계산서(부가세 과세)를 발급해야 하나요?

A 상품권은 회폐대용증권으로 재화나 용역이 아니므로, 상품권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